구 리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시 보

제 2433호

2024년 08월 14일(수)

차 례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4-1379호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 구리시 공고 제2024-1383호 구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람						

구리시공고 제2024-1379호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3일

구 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에 의거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게 화재·침수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형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전환경 지원 범위에 개폐형 방범창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3조제6호)

4. 개정 조례안 : 붙임1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6. 관련법령 및 현행조례 : 붙임3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9월 2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팩스 · 이메일(70061khs@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8947 FAX : 031-550-8915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개정 조례안

구리시 조례 제 호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형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안전총괄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채주영
	팀 장 직위·성명	안전관리팀장 이유정
	선임주무관 성명·전화번호	지방행정주사 김하순 550-8947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6. (생 략)	제3조(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형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7. (현행 제6호와 같음)

붙임 3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5. 3. 20.] [법률 제20376호, 2023. 3. 19., 일부개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현행 조례]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4.03.08 조례 제219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구리시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6.,2024.3.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13세 미만 어린이 <신설 2020.10.6>
7. 65세 이상의 노인
8. 그 밖에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명백하다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10.6>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6>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및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 노후 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4.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개정 2020.10.6>
5.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신설 2020.10.6>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10.6.>

제4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소방 등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0.6>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접수기간 시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제6조(점검 및 개선의 위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관련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549호, 2017.9.26.,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36호, 202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94호, 2024. 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공고 제 2024-1383호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구리시 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구 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시세 조례

2. 제안이유

상위법(지방세법)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소득세 세율 적용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세 부과 · 징수사무의 위임 근거를 명시함. (안 제3조)
-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주민세, 지방소득세의 세율 적용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5조~제10조)
-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도시지역분 적용대상과 세율, 납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4조)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규정함. (안 제15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1

5.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 붙임 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9월 3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moonee@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 (세정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세정과 (우471-702)

○ 전 화 : 031)550-2196 FAX : 031)550-209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구리시 시세 조례」

○ 성명(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개정 조례안**

구리시 조례 제 호

구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시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리시 시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개인분

제5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제2절 사업소분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의7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구리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부서		세 정 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세 정 과 장 강 은 옥
	팀 장 직위.성명	시세팀장 문 희
	담 당 자 성명.전화번호	지방세무주사 문희(550-2196)

붙임 2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시행 2024. 4. 1.] [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5장 담배소비세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 및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제7장 주민세

제2절 개인분

제78조(세율) 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1.12.28.>

②~③ (생 략)

제3절 사업소분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③ 삭제 <2020. 12. 29.>

제8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절 종업원분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7(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장 지방소득세

제92조(세율)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3(세율) ①~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⑤~⑩ (생 략)

제103조의20(세율)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9장 재산세

제111조(세율) ① (생 략)

1. (생 략)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

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5. (생 략)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83호, 2024. 7. 9., 타법개정]

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 ① 법 제55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난 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및 군(이하 이 장에서 "시·군"이라 한다)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해야 한다. 다만,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지난 달 시·군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는 과세대상 담배와 미납세 반출대상 담배 및 면세대상 담배의 반출이 각각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4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12. 31.>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생 략)

[관계 조례]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2021.04.22](일부개정) 2021.04.22 조례 제1913호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구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현행 조례]

구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2021.04.22 조례 제191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리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은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4.22.>

제2장 담배소비세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6.>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6.>

제3장 주민세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4.22.>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22.]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4.22.>

제7조(세율)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22.]

제8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6., 2021.4.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60

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도세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26.>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3절 종업원분<신설 2014.11.26.>

제8조의2(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본조 신설 2014.11.26.]

제8조의3(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본조실설 2014.11.26.]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삭제<2014.11.26.>

제9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4.11.26.>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4.11.26.>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4.11.26.>

제2절 삭제<2014.11.26.>

제10조 삭제<2014.11.26.>

제11조 삭제<2014.11.26.>

제5장 재산세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개정 2011.7.7.>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영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개정 2011.7.7.>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4. 선박

가.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개정 2011.7.7.>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제13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목개정 2013.5.14>)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도시지역분<제목개정 2013.5.14>)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개정 2013.5.14>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5.14>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취득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도세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26.>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도세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26.>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도세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26.>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도세 조례」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26.>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

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연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시장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표 개정 2013.5.14.>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초과	20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초과	24원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대형전세버스	70,0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 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만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 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6조(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913호, 2021.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